

第179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會 議 錄

(2005.6.2. ~ 6.4.)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179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I. 개회식 .....	265
II. 제17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267
III. 제17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273
IV. 부 록	
1. 의사일정안 .....	279
2.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81
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89
4.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95
5.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301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5년 6월 2일 (목요일) 11시 00분

## 開會式順(第179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김영구)

(11시 00분 개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 의사담당 김영구

지금부터 제17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11시 03분 폐회)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5년 6월 2일 (목요일) 11시 03분

## 議事日程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7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7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1시 03분 개의)

중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 ●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경과보고

(11시 04분)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지문기 학교운영 지원과장님께서는 당면 업무 추진차 출장

### ● 의장 고규강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

[제179회-제1차 본회의]

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옴)

● 의사과장 박경석

의사과장 박경석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안건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 5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교육위원회 집회요구와 동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공고 제2005-5호로 제17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화기 의결안건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제1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신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5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5월 11일 집행청에 이송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에는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고규강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79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시 05분)

●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9회 임시회 회기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6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6월 3일은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6월 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7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6분)

●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신강택입니다.

존경하는 고규강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학생들에게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고 국제문화 이해 능력 증진을 도모하며, 개인별 국외연수와 어학연수에 따른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외국어 교육의 효율성 확보 등을 통한 충북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을 설치하고 현재 충청북도학생회관에 증축하고 있는 교육박물관과 안전체험관, 그리고 충청북도학생회관으로 이전 예정인 한글사랑관의 운영 주체를 충청북도학생회관으로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을 신설하여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118번지에 두고 외국어교육원에 원장을 두어 소관 업무를 통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활동 계획과 조정, 그리고 외국어 교육과정 편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단위 기관별 부서의 설치, 부서장의 직급, 분장 사무 등은 동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충청북도학생회관의 업무에 교육박물관, 한글사랑관, 안전체험관 운영을

[제179회-제1차 본회의]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첨 2)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각급 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34조의 규정에 근거한 학교운영위원 보궐선출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해 옴에 따라 보궐선출의 경직된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보궐선출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보궐선출기한 20일에 대한 내용으로 학부모 위원 보궐선출 사유 중 자녀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동계 휴가기간 중에 보궐 선출하게 됨에 따라 학부모에게 이를 홍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신입생이 입학하기 전에 후보등록 기간이 마감되게 되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신입생 학부모가 배제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등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궐선출 기한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위원이 결원된 경우 잔여 임기가 3월 미만인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아니할 수 있으나 잔여 임기가 3개월 내지 6개월 미만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궐선출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임기가 너무 짧아 입후보를 꺼리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잔여임기 기간을 3월 미만에서 6월 미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3)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고규강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

(11시 12분)

●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두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심사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안은 즉시 조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6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7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진옥경 위원님과 김남훈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만 7천여 명이 참가해 전국소년체전 사상 최대 규모로 충북에서 개최된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교육가족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원활한 경기운영과 함께 풍성한 신기록을 수립한 성공 체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교육가족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충북의 열악한 도세 속에서도 메달 집계에서 종합 7위를 달성하였고, 충북의 메달 숫자가 체전 사상 처음으로 100개를 넘는 입상 실적을 거양한 데 대하여 선수와 지도교사, 학교장 및 학부모,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등 교육가족 모두가 혼연일체 노력한 결과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소년체전 기간 동안 우리 선수단을 방문하여 응원과 격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6년만에 우리 고장에서 개최된 소년체전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준비 단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신 김천호 교육감님과 집행청 관계관,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7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제179회-제1차 본회의]

---

0 출석위원 : 7명

의장 고규강, 부의장 김남훈,

위원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1명

교육감 김천호, 부교육감 서명범, 교육국장 노재전,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초등교육과장 전창동,

중등교육과장 연준, 교육정보화과장 박연태, 총무과장 이상기,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2)
-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3)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5년 6월 4일 (토요일) 11시 02분

## 議事日程 (제1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02분 개의) 다.

### ●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서명범 부교육감님께서 교육현안 협의차, 연희지 혁신복지담당관, 전창동 초등교육과장, 정찬구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연태 교육정보화과장님은 2005. 교육인적자원부 혁신박람회 업무 추진차 출장중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

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3분)

### ●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

[제179회-제2차 본회의]

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진옥경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안건별로 각각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나옴)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진옥경

조례심사소위원장 진옥경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5월 24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 2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2차에 거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주요 내용은 이미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안은 학생들에게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 부여 및 국제문화 이해 능력 증진을 도모하고, 개인별 국외 및 어학연수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과 외국어 교육의 효율성 확보로 충북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안 제23조에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을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118번지에 두도록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24조, 25조에 원장을 두어 소관업무를 통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활동 계획 및 조정과 외국어 교육과정 편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충청북도학생회관에 증축하고 있는 교육박물관과 안전체험관, 그리고 충청북도학생회관으로 이전 예정인 한글사랑관의 운영 주체를 충청북도학생회관으로 하기 위하여 안 제19조 제5항을 신설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 개정취지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에 보면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관의 설치에 있어 기관



의 장과 운영부서를 정하는 것은 기관 설치에 있어 골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직속기관 설치 목적인 고유 업무에 부합하도록 직속기관장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하지 말고 조례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4)  
(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 내용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그동안 보궐선출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일부 문제점인 자녀의 졸업에 따른 자격 상실로 보궐선출이 이루어지는 점과 동계휴가 기간중에 보궐선출을 하게 됨에 따라 학부모에게 이를 홍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신입생이 입학하기 전에 후보 등록 기간이 마감되게 되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신입생 학부모가 배제되는 등

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중 보궐선출 기한이 20일 이내로 되어 있는 보궐선출 기한을 삭제하고, 안 제3조 중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잔여임기가 3월 미만인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잔여임기가 너무 짧아 보궐선출에 입후보를 꺼리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6월 미만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 개정 취지 및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민주적 운영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의안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사전 참고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여 심의에 편의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참 조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5)  
(끝에 실음)

끝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으로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제179회-제2차 본회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돌아감)

● 의장 고규강

진옥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17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폐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고규강, 부의장 김남훈,

위원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0명

교육감 김천호, 교육국장 노재전,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초등교육과장 전창동, 중등교육과장 연준,

총무과장 이상기,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4)
-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5)

제17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5. 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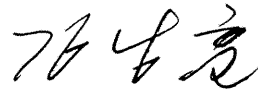
의 장 고 규 강



위 원 진 옥 경



위 원 김 남 훈



의사국장 조 계 환



(별첨 1)

## 議 事 日 程 (案)

第179回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2005. 6. 2.~6. 4.(3日間)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6월 2일(목) (11:00)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 제1차 본회의 ] 1. 제17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5. 6. 2. ~ 6. 4.(3일간) 2.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제안설명 “
6월 3일(금)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본회의 휴 회
6월 4일(토) (11:00)	[ 제2차 본회의 ] 1.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nput type="checkbox"/> 산 회  <input type="checkbox"/> 폐 회	



(별첨 2)

의안번호	제 199 ~ / 호
의결 연월일	200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5년 1월 14일

#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9 ~ 1
----------	---------

제출연월일 : 2005. 5. 24.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련 부서 : 총 무 과

## □ 개정이유

- 학생들에게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 부여 및 국제문화 이해 능력 증진을 도모하고, 개인별 국외 및 어학연수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 외국어교육의 효율성 확보로 충북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본청 직속기관으로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을 설치하고,
- 현재 학생회관에 증축하고 있는 교육박물관 및 안전체험관과 학생회관으로 이전되는 한글사랑관의 운영 주체를 충청북도학생회관으로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충청북도학생회관의 업무에 교육박물관, 한글사랑관, 안전체험관 운영을 추가(안 제19조)
- 나.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을 신설하여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118번지」에 둬(안 제23조)
- 다. 외국어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소관 업무를 통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 라. 외국어교육원장은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활동 계획 및 조정과 외국어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 □ 개정조례안 : 붙임

### □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입법예고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한다.

제19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교육박물관, 한글사랑관, 안전체험관 운영

제6절을 제7절로, 제23조 내지 제25조를 제26조 내지 제28조로 하고, 제6절(제23조 내지 제2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절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제23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중등 학생 및 교원들에게 체험활동 중심의 외국어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 부여, 국제문화 이해 능력 증진, 개인별 국외 어학연수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 외국어교육의 효율성 확보로 충북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이하 “외국어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외국어교육원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118번지에 둔다.

제24조(원장) 외국어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업무) 외국어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외국어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어 교육활동 및 연수에 관한 사항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4조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한다.

제20조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절 충청북도학생회관</p> <p>제19조(업무) (생략)</p> <p>1. ~ 4. (생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제4절 충청북도학생회관</p> <p>제19조(업무)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교육박물관, 한글사랑관, 안전체험관 운영</u></p> <p><u>제6절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u></p> <p><u>제23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중등 학생 및 교원들에게 체험활동 중심의 외국어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 부여, 국제문화 이해 능력 증진, 개인별 국외 어학연수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 외국어교육의 효율성 확보로 충북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이하 “외국어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p> <p><u>② 외국어교육원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118번지에 둔다.</u></p> <p><u>제24조(원장) 외국어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u></p>

현행	개정안
<p>&lt;신설&gt;</p> <p><b>제6절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b></p> <p><b>제23조(설치)</b>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계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에게 첨단산업 기자재의 실습을 통하여 교수·학습능력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산업현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이하 “공동실습소”라 한다)를 둔다.</p> <p>② 공동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p> <p><b>제24조(소장)</b> 공동실습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b>제25조(업무)</b> 공동실습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산업기계 공동실습교육</li> <li>2. 실업계 교원의 농업 또는 공업관련 특별연수</li> <li>3. 기타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수 및 교육활동</li> </ol>	<p><b>제25조(업무)</b> 외국어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li> <li>2. 외국어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li> <li>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어 교육활동 및 연수에 관한 사항</li> </ol> <p><b>제7절 (현행 제6절과 같음)</b></p> <p><b>제26조(설치)</b> (현행 제23조와 같음)</p> <p><b>제27조(소장)</b> (현행 제24조와 같음)</p> <p><b>제28조(업무)</b> (현행 제25조와 같음)</p>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 2005.1.25 법률 제7340호)

제34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04.1.29령 제18247호)

제12조(직속기관등의 하부조직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도 교육청간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도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의한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2004.10.8 조례 제282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내지 제36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별첨 3)

의안번호	제 199 회
의결 연월일	200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5년 1월 24일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9 ~ 2
----------	---------

제출연월일 : 2005. 1. 24.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 련 부 서 : 학교운영지원과

### 개정이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그동안 보궐선출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로 자녀의 졸업에 따른 자격상실로 보궐선출이 이루어지는 바, 선출 시기가 동계휴가기간으로 홍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입생이 입학하기 전으로서 신입생 학부모가 배제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궐선출 기한을 삭제함 (안 제3조)

나.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잔여임기가 3월 미만인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임기가 너무 짧아 보궐선출에 입후보를 꺼리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6월미만 남은 경우로 함(안 제3조)

### 개정조례안 : 불임

### 참고사항

- 신·구문 대비표 : 불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불임
- 입법예고 결과 : 제시된 의견 없음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결원된 날부터 20일이내에”를 삭제하고, 동항 단서중 “잔여임기가 3월미만”을 “잔여임기가 6월미만”으로 한다.

제1조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3조(위원의 선출등) ① (생 략)</p> <p>②위원이 꺾원된 때에는 꺾원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보꺾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꺾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생 략)</p>	<p>제3조(위원의 선출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위원이 꺾원된 때에는 보꺾선출하고,----- ----- 잔여임기가 6월미만----- ----- -----</p> <p>③ (현행과 같음)</p>

## 관계법령 발췌서

### □ 초·중등교육법 (2002. 8. 26 공포 법률 제6714호)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 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타 시·도 현황

### □ 보궐선출 기한

- 우리 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는 보궐선출 기한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 □ 잔여임기에 관한 규정

- 서울·광주·대전 : 우리도와 같음(3월 미만일 때)
- 기타 12개 시·도 : 개정안과 같음(6월 미만일 때)



(별첨 4)

제179회 임시회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05. 6.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5년 5월 24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5년 6월 2일,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5년 6월 2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5년 6월 3일)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 가. 제안이유

- 학생들에게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 부여 및 국제문화 이해 능력 증진을 도모하고, 개인별 국외 및 어학연수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과, 외국어 교육의 효율성 확보로 충북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본청 직속기관으로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을 설치하고,
- 현재 학생회관에 증축하고 있는 교육박물관 및 안전체험관과 학생회관으로 이전되는 한글사랑관의 운영 주체를 충청북도학생회관으로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충청북도학생회관의 업무에 교육박물관, 한글사랑관, 안전체험관 운영을 추가.(안 제19조)
-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을 신설하여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118번지』에 둠.(안 제23조)

- 외국어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소관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 외국어교육원장은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활동 계획 및 조정과 외국어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5. 심사보고 주요내용

- 학생들에게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 부여 및 국제문화 이해 능력 증진을 도모하고, 개인별 국외 및 어학연수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과, 외국어 교육의 효율성 확보로 충북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안 제23조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을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118번지”에 두도록 조문을 신설하였고,
- 안 제24조, 제25조에 원장을 두어 소관업무를 통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활동 계획 및 조정과 외국어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현재 충청북도학생회관에 증축하고 있는 교육박물관과 안전체험관, 그리고 충청북도학생회관으로 이전 예정인 한글사랑관의 운영 주체를 충청북도학생회관으로 하기 위하여 안 제19조 제5항을 신설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 취지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에 보면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직속기관 설치 목적인 고유 업무에 부합하도록 직속기관장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하지 말고 조례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5. 6. 4.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진옥경 진옥경

간사

성영용 성영용

위원

김남훈 김남훈

송대현 송대현

이기수

이기수

이상일

이상일



(별첨 5)

제179회 임시회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05. 6.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5년 5월 24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5년 6월 2일,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5년 6월 2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5년 6월 3일)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 가. 제안이유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그 동안 보궐선출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주로 자녀의 졸업에 따른 자격상실로 보궐선출이 이루어지는 바, 선출 시기가 동계휴가기간으로 홍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입생이 입학하기 전으로서 신입생 학부모가 배제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궐선출 기한을 삭제함.(안 제3조)
-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잔여임기가 3월 미만인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임기가 너무 짧아 보궐선출에 입후보를 꺼리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6월미만 남은 경우로 함.(안 제3조)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5. 심사보고 주요내용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그 동안 보궐선출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일부 문제점인 자녀의 졸업에 따른 자격상실로 보궐 선출이 이루어지는 점과, 동계휴가기간 중에 보궐 선출을 하게 됨에 따라 학부모에게 이를 홍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신입생이 입학하기 전에 후보등록 기간이 마감되게 되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신입생 학부모가 배제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중 보궐선출 기한이 20일 이내로 되어 있는 보궐 선출 기한을 삭제하고,
  
- 안 제3조 중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잔여임기가 3월 미만인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잔여 임기가 너무 짧아 보궐선출에 입후보를 꺼리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6월 미만으로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 취지 및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민주적 운영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5. 6. 4.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진옥경 진옥경

간사

성영용 성영용

위원

김남훈 김남훈

송대헌 송대헌

이기수

이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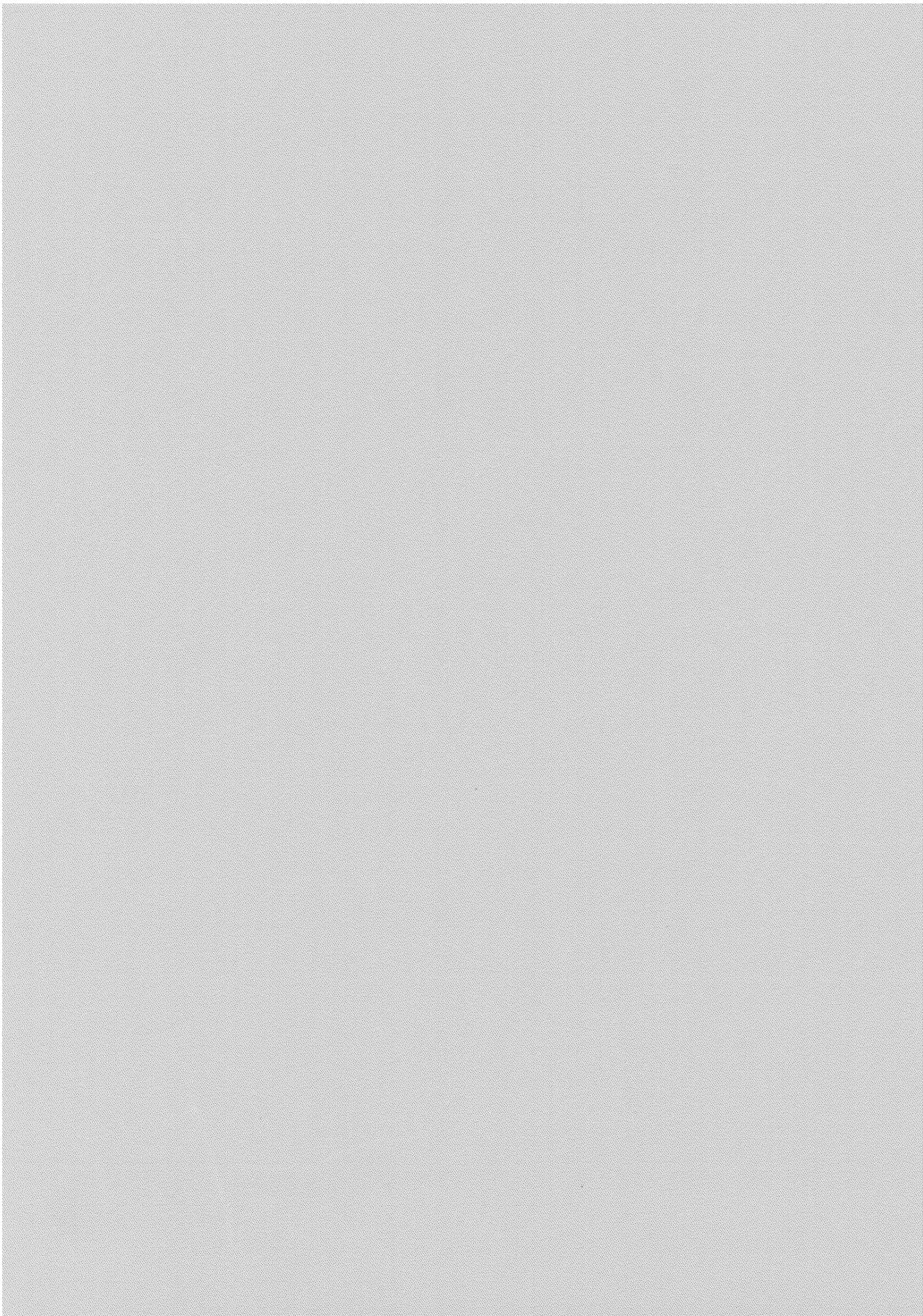
이상일

이상일

第179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 I. 제17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309
- II. 제17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313
- III. 부 록
  -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355



#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5년 6월 2일 (목요일) 11시 20 분

## 議事日程 (제179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20분 개회)

###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위원장선출의건

####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79회-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진옥경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현

진옥경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진옥경 위원님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진옥경

위원장을 맡은 진옥경입니다.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견

(11시 23분)

● 위원장 진옥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대현 위원

성영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진옥경

성영용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성영용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간사 성영용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이번 조례가 원만하게 또 정확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견

(11시 23분)

● 위원장 진옥경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견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소위원회 활동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으로 하여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

[제179회-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조례안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끝에 실음)

이러한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6월 3일 11시 제2차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11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진옥경, 간사 성영용,

위 원 김남훈, 송대현, 이기수, 이상일.

○ 출석공무원 : 3명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총무과장 이상기,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 부 록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5년 6월 3일 (금요일) 11시 01분

## 議事日程 (제179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1분 개회)

### ● 위원장 진옥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상정된 안건별로 주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관의 답변을 들으신 후 의결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 위원장 진옥경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

[제179회-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기획관리국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개정이유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학생들에게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 부여 및 국제 이해능력 증진을 도모하고, 개인별 국외 및 어학연수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과 외국교육의 효율성 확보로 충청북도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본청 직속기관으로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을 설치하고, 현재 학생회관에 증축하고 있는 교육박물관 및 안전체험관, 학생회관으로 이전되는 한글사랑관 운영 주체를 증축되는 충청북도학생회관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학생회관 업무중에서 추가하여 교육박물관 업무와 한글사랑관, 안전체험관 업무를 추가하고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을 신설해서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118번지에 두고자 합니다.

그 직제를 말씀드리면 외국어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며, 원장은 학생들의 외국어교육 활

동계획 및 조정과 외국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2쪽에 보시면 그 내용을 보시면 현재 저희들이 제19조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5호에는 교육박물관, 한글사랑관, 안전체험관 운영 그리고 현재 6절을 7절로 변경하고 23조, 24조, 25조를 26조 내지 28조로 하고 제6절에 23조, 24조, 25조를 유인물과 같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6절에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이렇게 설치를 하고, 23조에 제1항 법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중등학생 및 교원들에게 체험활동 중심의 외국어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 부여, 국제문화 이해능력 증진, 개인별 국외 어학연수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 외국어교육의 효율성 확보로 충북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을 설치한다, 2항 외국어교육원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118번지에 둔다, 24조 원장 외국어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25조 업무 외국어교육원 원장은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일 학생들의 외국어교육 활동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이 외국어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



한 사항, 삼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어교육활동 및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고 친구조문대조표는 4쪽과 5쪽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옥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 신청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네요.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외국어교육원의 소재지를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118번지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충청북도학생수련원도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수련원의 주소와 외국어교육원의 주소가 다른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네, 다릅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럼 그쪽에 몇 번지로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3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아, 은탄리 3번지 그러니까.....

두 번째로 질문드릴 거는 거기 제25조 업무에 외국어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이래 가지고 업무만 있는데 외국어교육원 원장을 어떤 직급으로 임명할 건지 나중에 시행세칙에서 듬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원장은 저희들이 조례가 최종 통과가 되면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칙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점이 궁금한 것이 지금 직속기관이 다섯 개 있는데 세 군데는 일반직이 기관장으로 되어 있고 과학교육연구원하고 단재교육연구원만 장학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교육이 주 업무이니 만큼 시행세칙에다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학관이 원장이 되도록 그

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이상기**

잘 알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옥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기수 위원님.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어교육원이 문백 학생회관 옆에 잉글리시캠프라고 우리가 명명해서 먼저 교육위원회에 처음에는 잉글리시빌리지로 명명했다가 그 다음에는 도의회에서 잉글리시캠프로 또 이번에 조례제정은 외국어교육원 이렇게 세 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애초에서부터 생각을 해 갖고서 한 개 이름으로 쪽 나와야지 시작과 끝이 이름 자체가 여러 번 반복이 되어서 번복이 되어서 우리 교육위원들은 처음부터 조례를 검토하고 그랬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교육과장 전창동**

초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어교육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

신 이기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처음에 잉글리시빌리지에서 그 다음에 도의회에서 잉글리시캠프로 그 다음에 외국어교육원 이렇게 이름이 변경되어 왔는데, 조례제정 시에 영어로 된 명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장의 호칭에 대한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 말 기관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정했구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것을 학습원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계획잡고 세울 때 그런데 명칭을 사용할 때 처음에 교육수요자인 학습자 중심의 학생외국어체험학습원으로 하려고 했으나, 교수활동과 학습활동을 포괄적으로 통합하는 교육원이라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앞으로는 거기가 영어만 할 것이 아니라 독어라던가 일본어라던가 중국어까지 확장하는 이러한 시설로 확대해 나가는 이런 시설로 하는 것이 좋겠다, 명칭이 좋겠다 그래서 외국어교육원으로 최종적으로 한 것입니다.

● **이기수 위원**

글쎄 과장님 의도를 알겠습니다.

영어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국제적인 변화에 따라서 중국어나 그 외 또는 제2외국어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영어라고 하든지 하면 다른 외국어에 대한 연찬문제는 하지 않는 것

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그렇게 정한 것은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지금서 알아 갖고서 그걸 영어로 요즘 본다면 모든 예산용어고 모든 것이 전부 영어로 되어 있어요.

저도 영어에 좀 관심은 있습니다마는 어떤 데는 약자로 되어 있어 갖고서 이게 무슨 자의 용어인가 알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이 써 가면서, 처음에 이런 걸 알았다든지 하면 처음서부터 외국어교육원이라고 이렇게 해 갖고 나가야지 먼저는 빌리지 나가고, 그 다음에는 캠프 나가고, 그 다음에는 교육원 설립하는 단계에 가서는 우리말로 써야 된다고 그래서 영어라고 하고 이렇게 된다면 과거 것하고 어떤 관계가 연관이 되는 건지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들이니까 조례가 올라올 때마다 전부 관심 있게 우리가 심의하고 했기 때문에 아 이 이름은 어디서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걸 알고 있지만, 먼저 조례는 통과됐다든지 어떻게 이렇게 됐으면 그 조례도 그러면 이름을 전부 잉글리시캠프 쪽에다가 전부 변경해서 외국어교육원이라고 이렇게 바꾸어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이런 걸 하실 때 좀 주의 깊게 모든 행정을 몇 년씩 내다보고 할 수는 없지만 다만 1년 이렇게라도 된가 처음서부

터 잘 명칭 하나라도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서 이름을 붙여나가야지, 그때그때 따라 갖고 자꾸 변동이 되어 갖고서 한다면 이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초등교육과장 전창동**

제 생각도 같습니다.

심사숙고한 게 최종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교육원으로 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게 외국어 이름 붙이면 그게 아주 빛나 보이고 품격 높아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말로 순수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 갖고서 누구라도 보고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교육기관인 얘기인데 전부 우리 한글이 외래어 특히 영어에 대해서 잠입 당하고 있는 실정에, 우리 교육기관 충북교육 쪽을 전체를 관장하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부터도 외국어를 너무 이름 같은데도 쓰지 말고 우리말 좋은 말로 바꾸어서 계속 앞으로 조례 제정이란든지 모든 것 명명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교육이니까 그러시고,

또 한 가지는 이상일 위원이 질문했는데 원장에 대한 자격문제 이것을 조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걸 사실 어느 분이

나 다 이렇게 하든지 하면 그 원장을 장학관 중에서도 외국어를 전공했다든지 영어든지 독일어든지 또는 중국어든지 이쪽 분야에 조예가 깊은 분을 원장으로 해야지 아무리 경영능력이 있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쪽에 전혀 문외한 분을 갖다가 원장에다 앉힌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물론 교육감의 인사권을 뭐가 제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원장자격을 거기다 못박을 필요가 있어요.

보면 비전공한 분보다는 평생을 그쪽에 전공한 분이 교육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더 잘할 수 있고 거기에서 원장 머리에서 나오는 교육원 운영방향도 독특한 부분이 있게 마련인데, 이걸 그냥 장학관이든지 하면 전혀 그쪽에 지식이 없는 분을 갖다가 원장으로 앉힌다든지 하면 밑에서 해 오는 것 그냥 결재하고 만다면 원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육기관하든지 하면 외국어 교육기관을 하든지 하면 장학관을 임명하되 그쪽에 외국어 쪽에 전공한 장학관 이렇게 못을 박아주는 것이, 물론 그것까지는 교육감의 인사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어 전공을 안한 분도 여러 가지 경영능력이 있는 분으로서 임명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이 상례입니

다.

그래서 원장에 대한 자격을 조례 속에 집어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구체적으로 넣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이기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집행청에서도 그러한 앞으로의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학관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전문가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아마 임명이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그것은 정원조례 시행규칙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장 장학관 이렇게 배치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 이기수 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원장자격에 대한 것을 안 넣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 ● 총무과장 이상기

이제 저희들이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기구설치조례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거기 조례에도 직급에 관한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본청, 지역교육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우리가 교육규칙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교육청에는 장학관, 단재교육원에는 장학관, 교육과학연구원에는 연구관 그 다음에 충청북도 학생외국어교육원에는 장학관, 중앙도서관에는 부이사관 일반적으로 보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이기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명시한 개괄적으로 해 놓고서 시행규칙으로 정하겠다는 겁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예, 직급을 그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글사랑관 또 안전체험관 이런 신설기구들을 꼭 신설해 갖고서 그걸 학생회관에 옆에 다시 신축하고 있는데, 그걸 크게 지음으로써 그쪽으로 옮기고 모든 한글사랑관이니 안전체험관이니 이런 것을 학생회관장 산하에다가 편입시키려고 하는 조례인데, 지금 학생회관이 그 외 여러 가지 업무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학생회관도 수영장이 갑자기 들어가고 자꾸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으로 되는데, 그걸 몇 개 직속기관이라던가 체험관

이라든지 이런 관은 한 개 독립해 갖고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그리고 나중에 학생회관장 업무가 자꾸 과중 되고 또 인원도 그때그때 떼어다 붙여 갖고 자꾸 늘어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그런 체험관이라든지 안전체험관이라든지 한글사랑관이라든지 이걸 우리가 학생교육을 위해 갖고서 우리가 신설한 이런 모든 시설들을 한데 묶어 갖고서 누가 책임자가 있어 갖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걸 쉽게 학생회관 옆에다 지어서 거기다 지어놓고서 학생회관이 한 가지 업무 또 맡고 또 맡고 해 갖고서, 처음의 학생회관하고는 좀 다르게끔 첨가된 업무로 이렇게 기관을 예측시킨다든지 편입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느니보다는, 앞으로 그런 시설이 계속 생길 것 같든지 하면 그걸 한데 묶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이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거의 학생회관은 업무가 사실은 미미했습니다. 미미해서 우리가 수영장을 그 위에 천장을 씌우면서 전천후로 사계절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가 늘어났고, 또 그 다음에 요번에도 우리가 한

글사랑관, 교육박물관 또 안전체험관 등 등은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는 별도의 그것을 기관으로 설치하기에는 업무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회관의 관장이 또 서기관이고 우리가 그런 것을 어디다 지을 만한 마땅한 부지도 없을뿐더러, 기존에 있는 직속기관을 자꾸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그러한 직속기관에다가 업무를 추가를 해서 우리가 정원만 거기에 따르는 공무원 배치만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선 선택을 부지를 학생회관에다가 증축을 해서 같이 하게끔 됐는데, 사실은 수영장이 우리가 사계절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업무가 많이 늘어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우리가 정원을 더 얻어서 사무관이 더 늘어났고 거기에 따른 직원이 늘어나서 거기에는 사무관이 전담해서 수영장을 운영을 하고, 요번에 새로 추가되는 세 가지 업무는 거기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 공무원을 더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 지금까지는 별 지장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 업무가 점점 증대가 되고 어떤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기능적인 업무대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현재 학생회관 업무중에서 업무를 관장해도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이기수 위원

이상 질의 드립니다.

● 위원장 진옥경

감사합니다.

김남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남훈 위원

교육위원 김남훈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연구원의 위치가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118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지금 현재 진천학생야영장이 존재하고 있는데 애초에 외국어교육연구원의 명칭이 점점 확장해 가지고서 캠프다, 타운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교육연구원까지 왔는데, 이 교육연구원으로다가 독립해서 기관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점점 그 일대를 갖다가 그 연구원으로 사용한다는 말씀인데, 그 옆에 있는 학생야영장은 거기다 존속해서 병행을 해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로 통폐합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우선은 수련원을 그대로 현행대로 운영

하고 그 옆에 외국어교육원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통합한다던가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김남훈 위원

그렇게 병행해서 운영할 경우에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을까요, 그럼 명실공히 외국어교육원으로써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현재 수련원에 있는 일부 기숙사 건물을 교육원으로 이관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사용하게 되는 문제는 있는데, 기타 다른 기관을 별도로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외국어교육원이 좀더 확대가 되어 가지고 기구가 확대된다던가 또는 수련원의 어떤 기능이 적어진다던가 할 경우가 발생하면, 그때 다시 재검토를 해서 통합하는 문제라던가 또는 이전하는 문제는 별도로 이렇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학생야영장의 교육내용하고 그 다음에 외국어교육원의 교육내용이 완전히 틀리다고 봅니다. 한쪽에서는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한쪽은 정숙을 기해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두 개의 교육원이 양

립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으로 드려봤습니다.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김남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천 야영장의 그 업무가 지금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서 하나는 대천에서 연중하고 있고 진천에 있는 야영장은 현재 6,7월 하절기에만 지금 성수기가 되어 있고 연중 하기는 조금 저희들 업무가 그거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외국어교육원을 거기다 같이 구내에다가 설치를 하면 야영장 기능과 좀 혼잡하지 않느냐 그런 의도이신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7월에 한시적으로 바쁘고 나머지 사계절동안은 그렇게 바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교육원은 거기하고 같이 있어도 하등의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훈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교육의 본질상 앞으로 교육원을 확대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그것을 갖다가 어떠한 형식이든지 이전을 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179회-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또 하나는 제안설명말씀 중에 단위기관 별 부서의 설치 및 부서장의 직급, 분장 사무는 동절의 시행규칙으로 정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행규칙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시행규칙이 어떠한 내용을 담을지는 저는 아직 설명을 들은 바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만 이것을 원으로 개원을 해서 운영할 경우에 최소한의 인원이 3,40명은 족히 든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정원확보대책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공무원 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것은 원장 밑에 교수부 그 다음에 총무부 양부를 두고 교수부는 연구관 또 그 다음에 그 연구관 밑에는 연구사 3명, 원어민 10명, 계약직 4명, 파견교사 6명 이렇게 해서 교수부에는 약24명 정도의 요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총무부에는 지금 4급 내지 5급인데 현재로써는 5급 1명, 6급 1명, 행정7급 1명, 기능직 5명 그렇게 하고 현재 수련원 야영장에 있는 6명 즉 식품위생직이라든지 간호직, 위생원, 운전원, 전기원, 난방원 6명 정도를 같이 교육원

에 겸임을 해서 약39명 정도의 인원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남훈 위원

아니 그 인원을 확보방안이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 근무하는 정원 외에 다시 그 인원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 총무과장 이상기

네, 확보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 김남훈 위원

신규인원을 확보할 수가 있다?

● 총무과장 이상기

예. 현재 순수하게 증원되는 것은 현재 기존의 연구관은 잉글리시캠프에 연구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사가 3명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어민 10명은 현재 우리가 추진 중에 있고 거기에 계약직.....

● 김남훈 위원

지금 현재 연구관이 하나 있는 것은 신규 티오를 받아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자체 총원제에서 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그렇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겸임을 하더라도 39명이고 그걸 제외하면 33명 정도가 되는데, 이 33명이라는 인원



을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 정원 외에 받아들 수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 총무과장 이상기

그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하게 우리가 총 일반직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교원전문직도 마찬가지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이 8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8명 정도가.

근데 그거는 우리 표준정원 내에서 우리가 자체 정원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 확보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김남훈 위원

자체, 지금 현재 총원 가지고서 총원제로다 운영하겠다 이 말씀이죠.

● 총무과장 이상기

예, 그렇습니다.

● 김남훈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옥경

다른 위원님 질의, 송대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 송대현 위원

학생교육원으로 신설하는 것 환영합니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그걸 전제로 하면서 몇 가지 아까 보충질의 겸 이기수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먼저 학생교육원 쪽에 잉글리시캠프가 우리 교육

위원들이 잉글리시캠프라고 심의를 한 것이 아니라 빌리지인가 타운인가 타운으로 이렇게 심의를 해서 도에 갔더니 뒤늦게서 나중에 통보 받은 것은 타운은 좀 큰 거고 하기 때문에 도의원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캠프로 고쳐야 된다고 해서 고쳤어요. 그것이 우리 조례에 학생교육원 속에 그때는 단위기관이 아니었으니까 하나의 부서로 넣어서 조례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가지고 잡고 짓고 한다 그래서 제대로 빛도 못 보고서 그것도 기분 나쁘죠.

우리가 무식한 꼴이 됐죠, 조그마한 걸 갖다가 캠프라고 해야 되는지 타운으로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도에서 딱 고쳤단 이거예요. 그것도 기분 나빴는데 이거 빛도 보기 전에 또 영어교육원이라고 이렇게 나는 좋아요. 교육원 되는 것 대 찬성하는데 이런 행정의 기획 부서에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6개월 내지 1년도 못 내다보고 하는 이런 졸속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요, 이 교육원이 되는 자체를 나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잘 짚고 방향이 옳게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기획 부서에서 집행청의 기획 부서에 1년 앞도 못 내다보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런 걸을 통해서 반성을 해야돼요.

또 하나 검해서 하나 더 얘기할 것은 이런 종합계획이 관리국장님 잘 들으세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문화회관이라고 하는 나는 '바이오'자 안 붙입니다. 교육문화회관이라고 하는 왜 과천시 부터 기느냐 이거예요. 바이오투를 가리키는 회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교육문화회관도 나온다고 그러고 또 정보연수원도 나온다고 그러고 지금 이러한 지금 아까 김남훈 위원도 티오관계 이렇게 묻고 참 별도 정원이나 정원을 확보했느냐 이것 중요한 문제거든요. 외국어연수원이라는 기관이 하나 서는 겁니다.

지금 또 아까 한글사랑관 등등해 가지고 학생회관이 기능이 없어 붙인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직속기관에 있는 단재라던가 연구원이라던가 기타 모든 연수원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설치가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검토하고 앞으로 발전계획을 넣어서 이걸 기관으로 설치할 적에 정원확보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종합계획 쪽으로 해야지, 그저 테이블 상에서 아이디어 하나 나왔다면 퍼뜨려 놓고 하다 보니까 한 6개월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고쳐야 되겠다, 이래 조례로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충청북도 교육의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 기획에 이러한 앞으로의

설치될 직속기관 등등해서 그 기관에 장은 뭐로 둘 것이며, 나는 아까 별도로 설치규칙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제 소견으로는 원장만은 장학관으로 보 한다던가 서기관으로 보 한다던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른 건 시행규칙으로 넘어가도 좋은데 그 부분은 일반직이나 전문직이나 하는 건데 그냥 편리하게 시행규칙 속에서 한다해서는 안됩니다.

장만은 기관의 설치의 장만은 조례 속에 서기관으로 보 한다던가 또 아니면 장학관으로 보 한다던가 장학관으로 하되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숫자가 조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 등등해서 앞으로 늘 일반직과 전문직간에 장애 대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지 아까 같이 캠프가 됐다, 타운이 됐다, 또 연수원이 됐다 빛도 안 봐서 1년이 되어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국장님 우리 충북 발전을 위해서 직속기관에 대한 부서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마스터플랜도 세워보고 몇 년도에는 이게 설 것이고 정원확보는 어떻게 하고 미리미리 교육부하고 절충해서 정원

따야 될 것 아닙니까? 서기관 티오도 따고 장학관 티오도 따고 해서 기관이 여기에 새로 선다면 장학관 티오 교육부에서 따 와야지요, 따 와 가지고 장학관도 우리 일선 학교에서 빼서 보충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게 현장 위주의 인원배치지 현장 중심이 아닙니까? 기관을 위해서 현장에서 빼다 넣는다고 하는 이러한 발상은 아주 편의하고 안이한 행정이에요.

미리부터 대비해 가지고 교육부에 올려서 정원확보도 하고 요구도 하고 우리가 이런 걸 기관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정원을 주시오, 일반 이런 정원 주시오 하지 지금 설치하는 것 자꾸 총괄 정원에서 자꾸 일선 학교만 어렵게 하는 겁니다. 인원을 빼 가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하나 관리국장께 요구합니다.

###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기관설치라던가 또 정원확보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 송대헌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지적했던 장학관이나 서기관이나 하는 문제는 우리 위원들끼리 또 한번 심도 있게 이게 과연 조례 속에 들어가도 되느냐 하는 것은 위원들끼리 심도 있게 나머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뭐 설치조례, 규칙이니 하는 얘기는 압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끼리 별도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 ● 총무과장 이상기

저 송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 송대헌 위원

질문 받으세요, 질문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탄 소리를 하세요.

무슨 답변이 나올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가 생략하고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제쳐두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설치조례에 내가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죠. 업무가 분명 포괄적이기는 합니다마는 딱 와서 당지를 알아요, 여기 업무 세 가지를 냈는데 세 번째는 좋습니다. 학생들이 외국어 교육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두 번째가 외국어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그것이 딱 어느 의미에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안설명서에 아까 설치목적에 목적하고 잘 표시가 됐더라구요, 설치목적에 설

치목적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시간도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유인물 주신 것 보면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의 설치에 법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중등학생 및 교원들에게 체험 활동 중심의 외국어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시설 같은 것도 되겠고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 부여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영어만 안하고 중국어도 해도 좋고 독일어도 좋고 불어도 좋고 하야간 이 연수에서 하는 가장 핵심적인 설치하는 목적이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넣어주자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교육에서 영어를 열심히 6년간 배워도 말 한마디 외국인 만나면 안벌어진다고 아십니까, 입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런 죽은 영어를 배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걸 통해서 원어민도 갖다놓고 거기서 회화중심 이렇게 하고서 설치목적이 사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중요해요. 국제문화 이해능력 증진, 글로벌 시대이니까 외국어니 문물과 문화와 외국사람들의 생활습관을 통해서 학생들이 배운다 이거예요, 원어민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야튼 중요한 목적이예요.

두 번째, 국제문화 이해능력 증진, 개

인별 국외 어학연수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 이건 부수적으로 올 수 있는 거고, 외국어 교육의 효율성 확보로 충북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도 이 설치목적이 가슴 탁 당도록 딱 써줘야 이게 사실 모든 도민이나 학생들이 대번 이해가 당는데, 지금 연수원의 업무를 조금 전에 아까 읽은 것처럼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은 중등교육과에서도 이걸 하고 초등교육과에서도 하고 시·군 교육청마다 다 이 업무를 외국어교육에 들어있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가.

두 번째, 외국어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이게 다 행정파트에서 외국어에서 들어있는 거예요. 어디에 눈을 씻을 봐도 우리가 가장 핵심인 의사소통이라던가 국제 글로벌시대에 국제 이해능력 증진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피부에 닿게 적혀 있어야 업무에 아 여기서는 회화중심하고 외국의 문화와 이해를 시키고 이런 것들이 하고, 세 번째도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어 교육활동 좋아요, 굿이예요. 및 연수에 관한 사항인데 이 연수도 교사연수에 관한 사항이예요. 이말 하고 뚝 떨어지게 교사연수에 관한 외국어 연수조, 교사를 넣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 그런 생각도 들

고 해서, 이 업무가 물론 광위로 보면 교육과정 편성이란 안 걸리는데 없어요. 이걸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뼈대와 즐기니까 우리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기본을 닦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 붙이면 어디든지 안 통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 외국어교육원의 설치목적에 부합해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업무가 나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 주관하시는 쪽에 계획한 파트 우리 총무과장보다는 이런 분야는 여기 내용적인 초·중등관계가 되겠네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초등교육과 잉글리시캠프 설립추진단**  
연구사 김명수

잉글리시캠프 연구사 김명수입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송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로 그런 목적으로 원장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하에 진술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들이 목적에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다시 그걸 밑에 반복해서 기록한다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포괄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 **송대헌 위원**

목적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조례를 읽어보면 그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거든요, 기관에 조례를 읽어서 아 이게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운영하는가 아닌 건데 목적이 조례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대로 삽입되니까? 조례 1조 밑에.....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대로 삽입됩니다.

● **송대헌 위원**

조례에 관련되어서 업무도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례하고 목적하고 그 업무내용이 너무.....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잠시 드리겠습니다.

교육원의 업무에 명시되어 있는 세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요 사항을 추진할 때는 앞에 23조에 목적에 있는 내용을 다 담아서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던가 또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한다던가 하게 되기 때문에 업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 **송대헌 위원**

앞에 목적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하부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다루어도 된다.

● **총무과장 이상기**

송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여기 조례에는 큰 그림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

들이 조례 시행규칙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거기에 상세한 것이 교수부에서 할 일과 총무부에서 할 일을 그때 상세하게 시행규칙에다가 나열을 하기 때문에 본 조례는 설치목적, 원장 그 다음에 업무를 기능적인 사항만 해 놓고 여기에 따르는 시행세칙, 규칙에는 교수부와 총무부에 따라서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송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나중에 시행규칙에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송대헌 위원

우리 현재로써 위원님들 심의하면서 시행규칙을 우리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심사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미진한 부분은 시행규칙에 다 있다, 다 있다 그러면 여기 가장 뼈대만 내놓은 것이다 하니까 그래도 심의를 하려면 시행규칙하고 연관이 되니까 우리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시행규칙에 아까 총무부가 있고 무슨 부가 있다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내가 메모를 했습니다마는 몇 부가 되는 건지, 거기에 부장들은 뭐가 되는 건지 다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 시행규칙에 있다는 답변이고, 지금 여기서 포괄적인 큰 것만 답아도 되겠다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더 이상 논의할 게 없죠. 큰 뼈대야 얘기할 게 없네요, 하나

도 논의할 게 없네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규칙을 정할 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담아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대헌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음시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학생교육원 쪽에 들어있는 조례개정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자동 삭제가 되는 겁니까, 이걸 신설한 걸 되면 그건 어떻게 자동 삭제가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캠프가 뭐를 하나 집어넣은 것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자동 삭제가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지금까지 조례는 이것이 처음이고 잉글리시캠프가 들어간 것은 제1회 추경 때 아직 이 명칭이 확정이 안됐고 잉글리시 캠프로 해 왔기 때문에 그 잉글리시캠프에 들어가는 예산만은 그 예산서에 잉글리시캠프로 정했습니다. 규정을 해서 명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칭으로 잉글리시캠프로 해 왔기 때문에 우선 추경예산에도 잉글리시캠프로 명기를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십사 하고서 그때 답변을 드렸

습니다. 그때 명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 송대헌 위원

양해를 바랍니다 하는 쪽으로 이해가 됐던 부분이다, 제가 그럼 미처 기억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요, 지금 얘기했던 뜻은 알았어요. 앞에 설치목적이 서 있고 조례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데 큰 틀에서 이렇게 해서 무난하다 하는 답변을 들었으니까, 우리 요 부분에 대해서 내일까지도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미처 판단을 잘못했다면 이 원안대로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쪽에도 더 연구를 해 봐서 과연 이렇게 명기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이렇게 바꾸어서 하는 것이 좋으냐 그런 것도 하고, 아까 연수에 관한 사항은 교원에 대한 얘기죠. 그 밑에 세 번째 것, 교육활동 및 연수에 관한 사항 교원들도 쓰는 것 아닙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교원이 주축이 될 수는 있는데 혹시 운영하는 편성·운영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라던가 또는 지역주민이라던가 이런 연수가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 송대헌 위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연수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했군요. 교원 말고도 학부모도 될 수 있으니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어 교육활동 및 연수에 관

한 사항,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옥경

다음에 성영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성영용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아주 상당히 좋은 질문들을 타 위원님 들께서 해 주셔서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이에 대한 연관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어교육원에 대한 확대 계획은 있으신지?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현재는 영어만 우선 시행을 하고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확대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영어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어라던가 기타 다른 외국어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확대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확대 계획이 있는 대로 따로 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성영용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외국어교육원 하게 되면 아까 말씀도 있어서 중국어나 일어나 타 불어나 여러 가지 다른 어학관계의 교육도 같이 진짜 외국어교육원으로

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수련원과 같이 병행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련원에 대한 교과내용을 아까 김남훈 위원께서 얘기도 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과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주셨으면, 나중에 우리 외국어교육원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과 외국어에 대한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같이 병행해서 아까 명칭관계도 상당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나쁘게 얘기하면 근시안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자꾸 현장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그때 자꾸 변화되는데 장기적인 이런 것도 플랜을 세워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혹 어떤 일이 있게 되면 좀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다방면으로 세우셔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학생회관 내에 안전체험관과 한글사랑관, 교육박물관이 신설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자들에게 대한 직급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지금 정원제에 묶여 가지고 우리 인원활용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 물론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가능하게 되면

아까 송대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장에 있는 사람을 뽑아다가 왔다 갔다 쳐 박아 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고, 만일 이게 안 된다면 정원을 어떤 방향으로 늘릴 것인지 있는 사람가지고서도 찢찢매고 그러는 판에 어떻게 가능한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성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무원 정원 확보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가 표준정원제 하에서 업무는 늘어나고 공무원 숫자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공무원을 배분을 해서 업무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느냐 하는 것이 사실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잉글리시캠프에 따른 지난번에 정원요청을 교육부에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사무관 1명만 저희들이 현재 확보한 상태고 지금 성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우리가 교육박물관에는 현재 우리가 배치예정인 6급 1명, 그 다음에 사무원 1명, 그 다음에 안전체험관에는 사무원 1명, 그 다음에 한글사랑관에는 현재 우리가 별정직 1명과 조무원 1명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박물관에는 업무가 전문박물관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하고 등록할 경우하고 또 틀립니다.

만약에 전문적인 교육박물관으로 등록을 할 경우에는 이것이 거기에 전문가를 채용을 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전문직으로 해서 현재 공무원의 확보를 해서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요것은 염려하신 대로 우리가 일선에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하지는 않고 우리 자체 여러 가지 기능상에 정원조정을 적절히 해서 성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유효 적절하게 공무원을 배치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간사 성영용**

상당히 어려운 대답을 해 주셨는데 정원에 관한 운영계획을 한 부 서면으로 제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그거는 저희들이 확정되면은 조례가 확정되고 나서 여기에 따른 정원규칙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규칙이 조정이 되고 나면 그때 전 위원님들께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성영용**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는 걸로 계산해서 어떤 계획이 있

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계획 세워놓은 것이 있으면 달라는 겁니다.

이거 조례 통과된 뒤에 또 작업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총무과에서 그렇게 근시안적으로는 일 안 하잖아요.

● **총무과장 이상기**

저희들도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확정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또 공무원 여러 가지 조정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일단 통과되면서 병행을 해서 우선 예측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아직 최종 조례가 통과되는 걸 보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정원이 확정되면 규칙이 되면 궁금하신 위원님들이 전부 다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유인물을 드려서 궁금증을 해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성영용**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진옥경 위원님 추가 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진옥경**

네, 질의해 주십시오.

● **김남훈 위원**

교육위원 김남훈입니다.

정원에 대해서 저도 아까 방금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참말로 애매 모호해요, 저희들이 묻고자 하는 질의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해 놓은 정원 외에 다시 중앙에서 정원을 확보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갖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걸 갖다가 지장 없게 정원조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100명이라면 그 100명안에서 인원을 다시 조정해서 하신다는 말씀인지, 그거는 제쳐놓고서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 다시 정원을 다시 또 확보해서 가져온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전문직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생략하고 일반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 김남훈 위원

아니 설명 필요 없어요. 자체 정원이나 아니면 중앙에서부터 다시 정하나 그것만 묻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상기

사무관 1명은 확보를 했습니다, 총무부장자리.

● 김남훈 위원

총무, 그리고 전문직은 아직 미정이고

요, 전문직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전문직정원 원장을 장학관으로는 한다면 그 장학관 티오 얻었습니까?

● 초등교육과장 전창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직은 원장 한 사람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건 지금 중앙정부에서 더 늘려주는 않고 자체적으로.....

● 김남훈 위원

그럼 어디에 있는 장학관 티오를 줄일 겁니까? 어느 부서의 장학관 티오를 줄여서 원장으로 임명할 건지 그 계획이 있으세요?

● 초등교육과장 전창동

그 구체적인 계획은 안 가지고 있고요.

● 김남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장학관 티오에서 그 장학관 부서를 없애고서 다시 그쪽으로 충당할 만한 부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원도 없이 이런 조례만 통과해서 인원을 갖다가 30,40명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을 건지 나는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선 이렇게 조례만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런 식입니까, 정원 확보가.

● 이상일 위원

이상일 위원입니다.

그 장학관이라고 해서 외국어고등학교

교장을 갖다 발령할 수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 김남훈 위원

아니죠. 전문직하고.....

● 이상일 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해 드려요.

외부에서부터 티오를 하나 더 못 얻어도 영어에 전문적인 교장인 교장이 장학관으로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그것만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 초등교육과장 전창동

예, 갈 수 있는 겁니다.

● 이상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장학관을 어디서 빼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직을 해서 영어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교장을 그리로 발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 초등교육과장 전창동

예.

● 이상일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쉬울 걸 자꾸.....

● 김남훈 위원

아니 초등과장님 분명히 답변하세요.

제가 알기에는 지금 현재 교장은 전직을 해야돼요, 전직을 근데 그 전직하고 저쪽에 한 티오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교육감이.

장학관 티오가 엄연히 있어요. 그건 교장 티오지 장학관 티오가 아니라구요, 물론 그 교장이 모든 것을 갖춘 모든 자격요건이 원장으로서 손색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원장으로 발령 낼 수 없다 이거예요. 제가 아는 상식은, 전직해서 장학관이 교장도 할 수 있고 교장이 장학관도 할 수 있고 그건 돼요, 그러나 그건 엄연한 거기는 룰이 있다 이거예요, 룰이.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남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학관 티오하고 교장 티오는 별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장이 장학관으로 가려면 전직을 해서 장학관으로 전직을 해서 이렇게 발령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장학관자리가 한 자리가 원장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장학관 재배치를 통해서 한 명을 그쪽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느 장학관을 그쪽으로 배치할 건지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걱정한 인원을 그쪽으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대헌 위원

장학관뿐만 아니라 아까 시행규칙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시행규칙안이 아마 잡혀

있는데 연구관도 있다고 아까 그랬어요, 연구관도 있고 티오가 장학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구사, 연구관 기타 등등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걸 확보해 가지고 일선에 피해가 안 되도록 하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선에서 빼고 여기서 빼 가지고 줄여서 갖다 넣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질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부분인데 시행규칙을 카피해서 안이지만 다 주세요.

거기 보면 지금 장학관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관도 있고 연구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요 자리만 피하려고 넘어가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티오도 없이 지금 시작을 해 놓고 조례를 해 놓고 빼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터놓고 얘기하면.

교육부에서 탄 건 지금 아까 사무관 하나 탄 것밖에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로써 얘기가 족한 것이지 자꾸 돌릴 얘기가 없어요. 현재 탄 것은 사무관 하나 확보되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또 부서 인력간 검사를 하든 뭘 하든 빼고서 충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계획은.

교육부에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

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잉글리시캠프 추진단이 설치될 때 거기에 연구관 1명과 그 다음에 연구사 3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확보가 된 것이고 그래서 걱정하신 대로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은 확보가 되어 있으므로.....

● 송대현 위원

그런데 그것도 교육부에서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정한 거죠.

● 총무과장 이상기

예, 조정한 겁니다.

● 송대현 위원

그 얘기가 맞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조정은 아닙니다. 조정을 해서 괜찮은 건 하는데 이걸 티오를 계획해서 따와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 총무과장 이상기

그거는 사실상은 어렵죠, 어렵고

● 송대현 위원

위에서 정식 기관 설치가 되면 요구해서 왜 기관이 설치되면 왜 정원을 안 줍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그거는 현재 3명되어 있고, 장학관 문제는 요것이 확정되면 확보할 계획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 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신 있게 확보를 하고선 보고를 드릴 테니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진옥경

답변이 되겠습니까?

● 이기수 위원

저도 잠깐.....

● 위원장 진옥경

예, 이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기수 위원

추가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앞으로 뭘 하겠다 해 갖고 먼저 예산편성에 집어넣어 갖고서 예산승인부터 받고서 그 다음에 설치조례안 같은 걸 이것도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잉글리시캠프에 대한 설립에 대한 예산승인은 났는데 외국어교육원설치조례는 지금 났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먼저 조례가 되어 갖고 이런 걸 하겠다 이렇게 딱 해 놓고서 그것이 승인이 난 다음에 예산을 올려 갖고서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그런 조례는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부터 해 놓고서 돈이 먼저 결정이 났다는 얘기죠.

이렇다면 미리미리 내년에 뭘 한다 외국어교육원을 설치한다든지 하면 그 설치조례부터 통과시켜 놓고서 시행 전에 예

산승인을 받아야지 아무 것도 없는 것을 예산승인 해준 거나 똑같은 예산체계상의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그러면 잉글리시캠프로 예산은 승인했는데 여기 외국어교육원조례가 되어 갖고 이름이 그걸로 뒀다면 그사이에 이름에 대한 변화는 설명을 하면 되겠지만 덩그러니 떨어져 갖고서 다른 건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엉뚱한 예산이 서 있는 것을 설립은 다른 이름으로 해 갖고 설립됐다는 얘기에요. 이게 안 맞아 돌아가는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외국어교육원설치든지 하면 내년이고 이걸 하겠다고 하면 예산은 언제 통과되겠느냐 1년 전쯤이라도 이 조례를 승인을 받아 갖고서 해 놓고서 거기에 걸 맞는 예산승인을 받아 갖고서 공사도 진행해 갖고 설치해야지,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조례라든지 나머지 예산이라든지 중요한 사항을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는다든지 교육위원들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도의원도 주민의 대표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갖고 여기서 통과가 돼야 되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얘기대로 총무과장님께서 조직이 머리에 다 있으셔서 갖고서 원장도 그렇고 거기 연수부장, 총무부장

뭐 이렇게 원장 밑에 몇 개 부 그 다음에 과, 머리 속에 있고 아마 계획은 잡혀있는지 모르지만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직에 관한 문제, 원장에 대한 문제나 조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은 조례 속에 넣어 갖고서 교육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서 이런 조직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서는 있어서 안 되겠고, 이것도 있어야 되겠다 이걸 심의를 받아 갖고서 올바르게 조직이 형성이 돼야지 되는 얘기지, 여기다 안하고 규칙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실무 부서에서 그냥 머리에서 생각해 갖고서 끝내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장의 자격, 교육원의 조직 몇 부서, 몇 과 이게 딱 되어 갖고서 인원까지 나올 수 있게끔 딱 내놔야 만이 우리 교육위원들도 심의에 벌써 야 이것도 안 되겠다 이것은 사실 설치해 갖고서 문제가 상당히 많으니까 이런 부서는 없애 갖고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 또 이 부서는 꼭 필요하니까 이것은 넣어 갖고 설치해야 되겠다, 이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앞뒤 두 가지 얘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이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

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하고 있는데 설치조례 제2조에 보면 국장, 담당관, 과장 등 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국장, 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래서 조례에서 저희들 교육감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임이 됐기 때문에 이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승인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급을 정하고 교육규칙으로 시행규칙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저희들이 임의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시면.....

● 이기수 위원

그게 조례보다 상위법에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예, 여기 조례에 현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에 교육규칙으로 직급과 이런 것이 정하도록 교육규칙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그 조례 잘못 된 것 같은데, 그걸 바꿔야지 되지 그걸 중요한 사항을.....

● 총무과장 이상기

그래서 집행적인 업무는 교육감이 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저희들이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도 제가 최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 송대현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진옥경

네, 송 위원님

● 송대현 위원

모순된 것 설치조례 바꾸는 것 아닙니까? 개정안을 내서 그 2조를 뜯어고치면 돼요.

● 이기수 위원

그거 고쳐야지 그게 되겠어요?

● 송대현 위원

문제가 되면 바꾸면 되지

● 이기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예산과 조례안의 개정안에 대한 순서관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제 얘기대로 조례안이 먼저 되고 예산의 승인을 받아야지 예산 먼저 승인해 놓고서 없는 기구가 조례를 나중에 승인되는 절차상의 문제가 거꾸로 된 것이 아닙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충분히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조례라던가 법령으로 정할 경우에는 실체가 있어야지 그걸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어느 정도 그 기관이 실질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실제 운영하기 직전에 설치조례에 포함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데, 조례를 먼저 넣어버리면 나중에 예산 문제라던가 이런 게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조례 제정한 걸 다시 또 바로 폐지해야 된다면가 여러 가지 절차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아니 그게 실체가 없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얘기인데.....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그걸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해서 어떤.....

● 이기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전번 교육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의됐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뭔가 실체를 만들어 놓고서 예산을 뒷받침 시켜줘야지 없는 얘기대로 예산 먼저 승인해 놓고 그 당시에 거기에 걸맞게끔 그러면 나중에 가 갖고서 조례에서 말합니다. 그게 부결된다고 하든지 하면 그 예산은 공중에 뜬 예산이지 그것도 문제가 있는 얘기지, 아니 계획 없이 돈이 필

요하다는 얘기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그런 사전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산안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 이기수 위원

계획이 되어야 만이 계획에 따라 갖고서 돈이 뒤따르는 얘기지, 없는 얘기에다가 어떻게 허공에다 예산을 편성합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현재 일반 직속기관뿐이 아니라 모든 학교를 설립한다던가 또는 뭐 어떤 교육청을 설립한다던가 이런 각종 기관이라던가 기구를 설립할 때는 무슨 그거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선행된 후에 현재는 그렇게 조례에 포함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 이기수 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비단 4대에서만 지적한 것이 아니에요. 저번에도 3대나 2대도 이런 부분부터 조례든지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해야지 예산이 거꾸로 올라온다든지 말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지적했던 부분인데 시정 안 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한번 검토를 더 해서 그런 어떤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는 좀 더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앞으로 좀더

수렴을 하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잘 검토하셔 갖고서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그런 논리로 서로 논쟁하는 것 같겠지만은 신중히 검토해 갖고서 뭔가 계획이 먼저라고 하든지 하면 계획 먼저 하고 예산승인 받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노력해 보세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진옥경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금 조례심사인데 실제로는 조례안이나 이런 항목에 대한 말씀보다는 그 이후의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간에 잉글리시캠프가 됐던 타운이 됐던 간에 하여튼 책자로 나오고 또 개략적인 어떤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받아본 일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것들을 인정하시는 가운데 양해 선에서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치조례를 개정하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시간동안 논의를 하게 되는 이유는 그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운영이나 뭐랄까 원장 이



하의 어떤 팀들을 구성할 때의 어떤 자격 요건이나 또 선발의 어떤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많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운영계획이 개괄적인 것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하다 못해 설치원장이나 그 외국어교육원설치조례안을 넣으실 때는 세부규칙안이라도 이미 마련을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설치조례를 개정을 해서 올린다면 거기에 관련한 의문점 같은 것들은 규칙안으로써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안 심사보다는 오히려 그런 공금증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점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충분한 정보나 사전적인 어떤 것들이 제공이 덜 됐고 실질적으로 집행청에서 그런 계획이 세부적인 계획이 전혀 없이 지금 순서대로 원장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어떻게 짜 맞춰서 사람들을 확보한 후에 다시 그 사람들 머리 속에서 또 전체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이 나오고 이런 식의 뭐랄까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세부적인 어떤 아이들을 그럼 실질적으로 영어를 어떤 식으로 어떤 단계까지 끌어올릴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일

단 기본적으로 플랜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그런 계획이 위원들에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세부규칙을 정한다 하지만 규칙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규칙안이라도 있어서 저희들에게 제공이 됐을 때 조례심사에 관련한 이런 시간 뭐랄까 지연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으로 말씀 드린 것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하면 그냥 우리는 조례안해서 내놓으면 위원들은 그냥 알아서 통과시키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을 버려주시고,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면적인 고려를 하고 계시다는 점들을 특별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의 설치 권장업무가 되어 있는데 업무는 원장의 업무 아닙니까?

이럴 때 다른데 행정기구설치에서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지만 그 업무라 하면 외국어교육원의 업무와 같이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원장의 업무인데 이런 명칭으로도 가능한 건지 일단 제25조 업무를 질의 드립니다.

마치 교육원의 업무에 관련한 조례처럼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원장의 업무라든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냥 업무로써 이렇게 하면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25조를 보시면 제목에는 조 제목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옆에 설명에 바로 외국어교육원장은 해 가지고 원장이란 명칭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진옥경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럴 때 괄호 안에 업무라고 하면 마치 밑에 있는 사항을 설명하기보다는 외국어교육원의 업무처럼 느껴진단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장의 업무라든지 이런 명칭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현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각 직속기관에 대한 모든 법 체계가 그렇게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진옥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 위원장 진옥경

그래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체계가, 그러니까 원장의 업무라고 이름을 바꾸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것이 그러하다면 바꾸는 것은 쉽지 않겠죠.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거를 추가적으로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옥경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박물관이 학생회관에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교육박물관을 하실 때 서원대학교 안에 있는 교육박물관을 다녀오셨는가 한번 보셨는가 했더니 오늘 담당자께서도 보셨다고들 말씀하셨는데, 이름이 명칭이 그냥 교육박물관으로 하기에는 너무 밋밋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충북교육박물관으로 명칭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서원대학교 안에 있던 것이 그렇다면 이것을 좀 다르게 이야기한다든지 해선 혼선을 방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외부에서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오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교육박물관에 대한 명칭이 이것이 혼돈을 야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거기에 대한 고려는 없으신지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면 그 앞에 기관 주체가 충청북도학생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사내에 있는 조직을 충청북도로 또 넣기가 여러 가지

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충청북도라던가 충북이라던가 그런 내용은 좀 제외를 시켰거든요.

● 위원장 진옥경

그래 학생회관 내에 교육박물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를 찾아갈 때 충청북도의 어떤 교육박물관을 찾아간다 거기를 가고싶다 하고 타 지역에서 올 때 어디를 갑니까?

학생회관 안의 그러면 학생회관내 교육박물관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그것이 매우 번거롭고 그래서 딱 하나의 이름으로 서원대학교에 기존에 있던 교육박물관과의 어떤 차별성을 지닌 그런 명칭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조금 혼돈스럽습니다. 제가 한밭교육박물관인가 대전에도 있고 이렇게 뭐랄까 특색을 살린 교육박물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회관 내에 어차피 현판을 내다 걸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박물관이라고 이름을 붙이기에는 일단 그것이 지역 내에 두 개의 박물관이 혼돈이 될 수 있고, 또 특색이나 이런 것들을 살릴 수 없는 너무 밋밋한 이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지 않으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

로 저희들이 충청북도학생회관 내에 같은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명칭은 별도로 우리 교육박물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 위원장 진옥경

만약에 인터넷에서도 어떤 기구에 대한 지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학생회관 안에 교육박물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혼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서원대학교에 있는 것이 충북교육박물관이라면 이거는 도교육박물관이라든지 이름을 차별화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서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혹시 향후에 어떤 홍보라던가 표지설치라던가 이런 것을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표시를 한다던가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진옥경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이름을 공모할 수도 있는 것이구요. 저는 한글사랑관이나 안전체험관 같은 것들도 너무나 뭐랄까 명칭이 아이들의 어떤 한글 사랑을 북돋고 또 안전체험에 대한 의식을 높인다는 그런 차원이라면, 보다 더 다가가기 쉽고 또 아이들이 기억하기 쉬

운 이름을 별칭으로라도 공모해서 붙이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고, 교육박물관에 한해서 말씀드리면 혼돈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명칭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진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학생회관 내에 한 일부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박물관, 안전체험관 그 다음에 한글사랑관 이렇게 붙였습니다마는 이것이 운영하면서 학생회관장이 그것을 학생들에게 좀더 다가갈 수 있도록 알기 쉽고 하는 것은 운영주체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모집해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업무만 추가로 우리가 학생회관에 추가한다 하는 것만 조례에서 저희들이 명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진옥경**

저는 그런 부분에서 신설한다 할 때 교육박물관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시간이 지금 1시간 반이 경과되었습니다. 어떻게 식사를 하시고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회하셨다가 바로 이어 하시겠습니까?

또 하나의 조례안이 남았는데요, 위원

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 **송대헌 위원**

점심식사하고 하죠.

● **위원장 진옥경**

점심식사 하시겠습니까?

● **간사 성영용**

지금 현재 안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더하고 요거 끝나고 다음 하는 걸로 하죠.

● **위원장 진옥경**

식사하시고 하시겠습니까?

그러시죠.

● **간사 성영용**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려다 제가 빼놓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외국어교육원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명칭이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아납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게 좀더 확대되어서 진짜 지역주민과 교직원도 쓸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고 그런데 '학생'이라고 딱 못박아 놓는 것보다 광범위하게 '학생'자를 빼고 충청북도외국어교육원 이렇게 명칭을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칭은 학생외국어교육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 프로그

램을 운영할 때는 아까 잠시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를 위한 교육과정이라던가 또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대외적으로 이렇게 표시하기는 그냥 외국어교육원보다는 '학생'자를 붙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총무과장 이상기**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학생을.....

● **간사 성영용**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교직원도 쓰고 학부모도 쓰고 또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칭을 한번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만약에 도에서도 이런 걸 건립한다고 그러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주체가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그리고 학부모나 교수는 부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학생'자를 넣는 것이 우리가 더 명분이 서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 끝에 저희들이 학생을 넣었습니다.

● **간사 성영용**

도에서 외국어교육원을 하나 세운다고 그러면 그런 장기적인 플랜이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 **총무과장 이상기**

그거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교육의 주체가 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논의 끝에 학생을 위주로 해서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 언젠고 장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대두될 때는 그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되겠죠.

● **간사 성영용**

교육내용상 교직원도 들어가고 학부모도 있고 다 이러니까 '학생'자를 빼고 그냥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든 거예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는 걸로 하고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옥경**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몇 시에 제기하시겠습니까?

● **김남훈 위원**

1시 반

● **의사담당 김영구**

지금 12시 반인데요.

● **이상일 위원**

1시간이면 되죠, 식사 빨리 하면.

● **의사담당 김영구**

여유 있게 2시에 하면 어떨까요?

● **이상일 위원**

그러지 말아요, 한 시간이면 되지 될

● **위원장 진옥경**

[제179회-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네, 그러면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위원장 진옥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진옥경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입니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그 동안 보궐 선출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주로 자녀의 졸업에 따른 자격상실로 보궐선출이 이루어지는 바 선출시기가 동계

휴가기간으로 홍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입생이 입학하기 전으로써 신입생 학부모가 배제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3안에 보궐선출기한을 삭제하고자 하며, 또 안 제3조에 위원이 궐원될 때에는 잔여임기가 3월 미만인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임기가 너무 짧아 보궐선출에 입후보를 꺼리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를 6월 미만 남은 경우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진옥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전혀 안 계신 모양이십니다.

지금 이제 운영에 관련해서 학교운영위원 임기 개시일과 종료일이 일반적으로 지금 언제입니까? 학교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겠습니까마는 대동소이할 텐데 3월 중에 구성해서 4월부터 시작됩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입니다.

4월 1일 개시해서 3월말이 되겠습니다.  
임기가 2년이니까요.

● 위원장 진옥경

네, 3월 말일에 끝납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네

● 위원장 진옥경

그러면 보궐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경우에 2월말로 끝난다는 말씀이 시지 않습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졸업일로 끝나는 겁니다. 3학년 학부모 일 경우 졸업일로 종료가 됩니다.

● 위원장 진옥경

그래서 동계방학동안에 다시 보궐선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20일 내에

● 위원장 진옥경

저로서는 그것이 동계방학이 아니죠. 그러면 2월 20일 정도에 졸업을 한다면 2월중에 선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요, 그것이 방학중은 아니지 않습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학교에 따라서 2월 중순까지 방학하는 데도 있습니다. 거의 다 지금 초등학교는 2월 중순까지입니다.

● 위원장 진옥경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심의는 언제 합니까, 만약에 2005년도 예산심의는 몇 월에 합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입니다.

1월서 2월 사이에 합니다.

● 위원장 진옥경

그러면은 졸업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일 경우에 예산심의까지 마치고 그러면 결석이 되는 것입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예, 학교에 따라서 편차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진옥경

그러면 3개월이라든지 이런 블랭크가 생기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4월 1일부터 해 가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3월 달에 신입생이 들어오고 그리고 3월 중순이나 이렇게 해서 공고하고 그 다음에 선거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불과 블랭크라는 것이 만약에 고3이나 중3이나 아니면 졸업생의 학부모가 나가게 됨으로 해서 생겨나는 그런 공백은 그렇게 크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지금 왜 이런 안을 만약에 지금 개정조례안의 형태 라면 4개월이나 5개월에 정도의 해당되는 공백 그 기간을 그대로 그냥 없는 채로 운영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지금 3개월 이상은 선거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6개월로 지금 완화하면서 그 기간은 운영위원이 만약에 없더라도 보궐 선거를 다시 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개정안이 아닙니까?

지금 올라온 것이, 그러면 4개월이나 5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을 경우에 그대로 운영한다는 그런 요지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간사 성영용**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운영위원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 **위원장 진옥경**

글쎄, 위원이 질의하고 위원이 답변을.....

아니 지금 집행청의 답변을 일단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된 원인이 졸업생의 졸업으로 인해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 보궐선거가 동계에 이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워서 3개월에서 다시 6개월로 그것을 완화시키고 그 상태로 그냥 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진옥경**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이유가 합당치

않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임기 개시일이나 종료일 그리고 학생이 졸업하는 2월말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잔여임기가 4,5개월 남은 경우 보궐선출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선출된 후에 임기만료 시까지 통상적으로 1회 내지 2회 정도 회의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위원으로서 임기가 너무 짧으며 이로 인하여 입후보를 꺼리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기간을 좀 길게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진옥경**

글쎄, 저도 꺼리는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에 입후보하시는 분들도 매우 제한적인 데다가 결석인 경우에 결원이 경우에 다시 그것을 잔여임기를 채우는 그러한 형태라면 구하시기 쉽지는 않으시겠죠.

그렇지만 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어떤 기본정신이나 이것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운영에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그 다음에 적법한 절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건들을 예·결산부터 해서 학교운영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의안들을 심의하게 되는데, 구



태여 지금 있는 현행에 있는 것들보다도 민주주의에 어떤 기본 원칙인 의사정족수 이런 것들을 부족한 채로 그냥 운영하는 개정조례안이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에 어떤 기본 취지나 이런 것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그래서 저는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아닙니다.

실제 일선에서 또 면 단위 학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20일 내에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응하는 사람이 없고 해서 사실상 그런 블랭크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임기가 2년이니까 모든 학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내학교 같은 경우는 후보자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면 단위나 또는 농촌 지역 학교에는 출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입생이 제외가 되니까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 내지 2회만 참석하고 바로 선거에 들어가니까 전부 기피합니다. 그나마도 기피하는 거죠.

● 위원장 진옥경

그러면 연임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2년입니다.

● 위원장 진옥경

그러니까 계속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잔여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피한다는.....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학년별보다 골고루 다 분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종전대로 하면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다 지금 이렇게 개정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진옥경

저는 그러면 학교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궐석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그런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합니다.

● 위원장 진옥경

재 선출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그 안에서 재 선출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의사정족수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 위원장 진옥경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비율이라든지.....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비율이 정해져 학교별로 다 틀린데 학

년별로 비율을 정하는 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교사위원이 있기 때문에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 위원장 진옥경

제가 며칠 전에 5월 26일자인가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역의 주간지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운영위원들이 물론 좋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역의 유지로써 여러 가지 활약을 많이 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회의에 잘 참석도 못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염불보다는 잣밥에 관심이 많은 그런 취지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학교운영에 오셔서,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을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함으로 해서 생겨나는 학교 안에 비민주적인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한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부분에서 뭐랄까 지역위원이 학교운영위원장을 맡지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반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손질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지금 이런 3개월에서 다시 6개월 후퇴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이 없기 때문에 의사정족수를 계상하기가 애매 모호하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문제들

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들 제가 교육청에 지난 도 교육감선거 때도 교육청 직원들이 대거 지역위원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선거인단의 문제점들 제가 언젠가 지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제한 요건이라든지 보다 학부모들의 의견들을 자유롭게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정조례안을 올라오지 않는 채로 어째서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5월 26일자 지역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향후에 조례나 이런 것들을 개정할 의향들은 없으신지 지금 이것은 너무나 미미한 그야말로 형식적인 개정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지역위원을 위원장으로 가급적 억제한다든지 선출되는 건 억제한다든지 하는 그런 지시 같은 건 전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오히려 더 그런 문제들이 더 문제점을 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진옥경

그러면 여기에서 생겨나는 문제점들은 그냥 놔두면 굉장히 학교운영 전반에 민 주성을 저해.....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그거는 학교운영위원 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도교육청에서 그걸 갖다가.....

● 위원장 진옥경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율이라든지 학부모 운영위원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 인사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율을 재조정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그거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안 되고 저 위에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사항이 되 겠습니다.

● 위원장 진옥경

그러면 건의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지금 지역에서 이것이 민주주의를 저해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정되지 않은 채 지금 3개월이나 6개월이나 이런 것들 을 조례를 제가 개정하고 있어야 되는 저 자신이 매우 한심해서 드리는 말씀입니 다.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에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실 계획으로 있으셨는

지 또 아니면 본 조례심의회에 이런 부차적 인 이런 것들보다도 보다 근본적인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건의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지금 저희들은 문제점을 그렇게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대로 더 큰 문제점을 야 기하기 때문에 제시할 수가 없다고 그랬 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그걸 검토해서 건의하겠습 니다.

● 위원장 진옥경

그거는 교육위원에게 집행청의 역할을 지금 전가하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청이 무엇을 하는 기관입니까?

저희들은 대안을 제시는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문제점이 지금 크게 학부모의 입장에서 그렇고, 전체 학교운영의 민 주주의에 반하는 그런 운영들이 있다고 엄연히 언론기사화까지 되어 있는 부분들 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도 없이 교육위원 한테 지금 그것을 전가하시는 답변을 하 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더 큰 문제 를 야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 해 보셨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민주적으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저희들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법적 인 문제로 제도개선을 요 한다던가 어떤 문제점 있는 사항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어떤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안을 만들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그것이 법을 개정해야될 문제인지 또는 어떤 운영상의 문제인지 그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반영시켜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 위원장 진옥경

그렇게 제대로 잘 제가 6월 달에 지금 조례심사 하면서 건의 드린 부분들이 언제쯤 그것이 가시적으로 들어내게 되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그 지적, 왜 동계에 그것이 선거를 하게 됨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제대로 오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매우 미약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도 납득할 수가 없어

요. 답변을 하셨지만 동어 반복일 뿐이고 어떻게 해서 그것이 동계이기 때문에 선거가 어려워서 그것이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뒤에 답변하신 차라리 출마를 기피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구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근데 그 제안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취지의 여러 군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임기 개시일과 만료일과도 맞지 않는 이런 설명들을 저희들한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3개월이니 6개월이니 하는 오히려 저 자신으로 볼 때는 이것이 3개월인 경우에 3개월 정도의 어떤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보다는, 오히려 학교운영위원회의 파행적인 한 사람이 없음으로 해서 그대로 운영되고 학부모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오히려 지역 인사들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는 있는 어떤 여지 이런 것들을 저는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조례를 교육위원회에 올렸을 때 이것이 가장 당면하고 또 긴급한 어떤 사안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 없이 제가 보기에 너무 안이한 조례가 올라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갖다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점으로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두 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두 가지 사항을 먼저 좀 빠른 시일 내에 문제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낸 거고요, 그 외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계방학 중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걸 갖다가 기간을 좀 없애려고 하는 이유는 동계기간 중 하게 되면은 신입생 학부모들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그런 기간이라던가 기간을 연장을 해서 신입생들 학부모들이 좀 운영위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옥경

그러니까 신입생은 새로이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에 입후보하고 들어오면 되는 것이죠. 반드시 결원이 된 그 부분에 신입생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것은 매우 미미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취지나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신입생들은 새로이 뽑을 때 새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3월 달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안 되는 겁니다. 2년에 한번씩이니까요.

● 위원장 진옥경

그 임기가 거기에 해당이 안될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교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2년에 한 번씩 지금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 모든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이 사항입니다.

고민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고민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진옥경

신입생들의 요구를 그럴 경우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임기가 1년이라면 그런 문제점이 별로 없는데요,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위원장 진옥경

그렇습니까?

임기가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가 아니고 임기 2년입니까?

제가 우리 충청북도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학교운영위원 그 조례를 찾아봤더니, 아 충북은 2년 임기에 1차에 한하여 연임이로군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쨌거나 고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학교운영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그런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기를 기대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진옥경

다른 위원님들 더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정을 하시기 위해서 따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의견조정을 위한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 위원장 진옥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협의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 함)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회의 심사 중에 거론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리하여서 내일 본회의 때 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으니 집행청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청 관계자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진옥경, 간사 성영용,

위 원 김남훈, 송대현, 이기수, 이상일.


0 출석공무원 : 5명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초등교육과장 전창동, 중등교육과장 연준,

총무과장 이상기,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제17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5. 6. .

위원장      진 옥 경 



(별첨 1)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7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05. 6. 2. (목)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05. 6. 3. (금)  11:00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